

개인정보보호 규정

2009. 12. 16. 제정

2016. 9. 23. 전문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전자적·비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교 각 기관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3. “개인정보처리시스템”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.
4. “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”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, 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5. “개인정보보호 분과별감독자”(이하 “분과별감독자”라 한다)란 교원·직원·학생의 각 분과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6. “개인정보보호 기관별책임자”(이하 “기관별책임자”라 한다)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7. “개인정보취급자”란 본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8. “내부관리계획”이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, 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 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.

제4조(개인정보 보호원칙) 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③ 개인정보는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

야 한다.

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

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.
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
3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4.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
5. 개인정보파일 관리·감독 및 파기
6.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둔다.

제6조(분과별감독자의 지정 및 업무) ① 분과별감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교원: 교무처장
2. 직원: 총무처장
3. 학생: 학생처장

② 분과별감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 현황 감독
2. 개인정보 유출, 침해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
3.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

제7조(기관별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) ① 기관별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한다.

② 기관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정보취급자 지정, 감독 및 교육
2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민원 접수 및 처리
3.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
4.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
5.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책임자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를 두고 기관별담당자를 둘 수 있다.

④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는 팀장 또는 기관별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, 개인정보보호 기관별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가 지정한다.

제8조(개인정보보호심의)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9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

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
2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
3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 - 가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·관리 조치
 - 나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
 - 다.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- 라.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·점검 조치
 - 마.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
4.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5.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,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.

제10조(제재) 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본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이미지를 훼손한 자는 본교에 대한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·노출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, 보안상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·노출이 우려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.

제11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.

부칙 <2009. 12. 16. 제정>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3. 전문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